

제1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3. 3. 14.(목) 10:00

2. 장소 :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이계철 위원장

김충식 부위원장

홍성규 상임위원

김대희 상임위원

양문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음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민의례

③ 개회선언

④ 회의공개여부 결정

- o 의결안건 '다'는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, 나머지 안건은 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함

⑤ 지난 회의록·속기록 확인

- o 제11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, 제12차 서면회의의 회의록을 확인하고 접수함

⑥ 의결사항

가. SK브로드밴드(주)의 법인합병에 관한 건 -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변경허가 및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승인 - (2013-13-036)

- 오승곤 융합정책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SK브로드밴드(주)가 자회사인 브로드밴드 미디어(주)를 합병하기 위해 신청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변경허가 및 방송 채널사용사업(Btv 쇼핑) 변경승인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허가 및 승인하기로 의결함

나. SK텔레콤(주), (주)KT와 (주)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- (2013-13-037 ~ 039)

- 정종기 이용자보호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SK텔레콤(주), (주)KT, (주)LG유플러스가 '12.12.25.'~'13.1.7. 기간 중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금지행위 중지 및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 조치 명령과 과징금(SKT 31.4억원, KT 16.1억원, LGU+ 5.6억원) 부과를 의결함
- 주요 내용

① 조사결과

- '12.12.25.'~'13.1.7. 기간 중 이통 3사의 전체 가입건수 1,111,997건(기기변경 가입건 포함)중 65.523건을 분석한 결과
- 이통3사가 이용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라고 판단되는 기준(27만원)을 초과하여 지급한 위반율이 SKT 49.2%, KT 48.1% LGU+ 45.3%로 확인함

② 근거법령

-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[별표 4] 5호 마목 1)은 "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"하는 행위를 금지

③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

< 시정조치 명령 >

- (1) 금지행위의 중지 : 가입자(기기변경 가입자를 포함)를 모집하면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
- (2)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: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사업장, 대리점에 KT는 10일, SKT는 7일, LGU+는 7일간 공표
- (3) 시정명령 이행계획 및 이행결과 보고 :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

이상의 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통위에 제출하고,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결과를 방통위에 보고

< 과징금 부과 >

- 과징금 부과(총 53.1억 원) : SKT 31.4억 원, KT 16.1억 원, LGU+ 5.6억 원

다.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 임명에 관한 건 - (2013-13-040)

- o 백기훈 정책기획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 방문진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공석 중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에 김문환(金文煥, '46生)씨를 임명하기로 의결함
※ 임기 : 임명일 ~ '15. 8. 8.(전임자의 잔여 임기)

7 보고사항

가. 안전한 유무선 전화결제 환경 조성을 위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

- o 안전한 휴대폰 소액결제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한 「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개선 대책」을 박재문 네트워크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- o 주요내용

① 법제도 개선 대책

① 명시적 동의자에게만 통신과금서비스 제공

- 통신과금서비스 이용 및 한도증액시 사업자가 가입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('13.3월~)

② 운영규정 마련을 통한 이용자 보호 수준 제고

- 이용자 보호에 관한 세부 운영규정(고시) 마련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내 근거 신설 추진('13.3월~)

※ 운영규정 내용 : 이용한도 기준, 휴면가입자 이용정지, 콘텐츠 판매자 관리 등

③ 통신과금 이용 세부사항 명시를 위한 약관 개선

- 통신과금 이용 및 한도증액시 명시적 동의, 휴면가입자(1년 이상 미사용) 이용 정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세부사항을 약관에 포함 시행('13.7월~)

② 자율규제 및 모니터링 강화

④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의 자율 안전조치 강화

- 이용자 피해 책임, 콘텐츠 판매자 준수사항 등을 사업자간 계약서에 명시하고, 인증단계(개인 비밀번호)를 추가하는 '안심결제' 확산 추진('13.3월~)

⑤ 실시간 결제 분석을 통한 비정상 결제 차단

- 이용자의 거래정보로 결제 패턴을 분석하여, 스미싱 등으로 우려되는 비정상 결제가 차단되도록 추진('13.3월~)

⑥ 스팸 모니터링과 연계하여 악성코드 배포 방지

- 통신사와 KISA가 공유·분석하여 사기 피해를 야기하는 악성코드 및 유출 목적지 연결 차단('13. 6월~)

③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및 홍보 강화

⑦ 통신과금 위해요소 공동대응 체계 구축

- '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' 구성·운영을 통해 신종 사기 및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('13. 상반기~)

⑧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이해 증진

- 통신과금서비스의 올바른 이용과 피해 방지를 위해 주요 매체·청구서 등을 통해 피해 유형 및 사례 홍보('13.3월~)

⑧ 기타

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o 별도 통지키로 함

6. 폐회 (11:05)